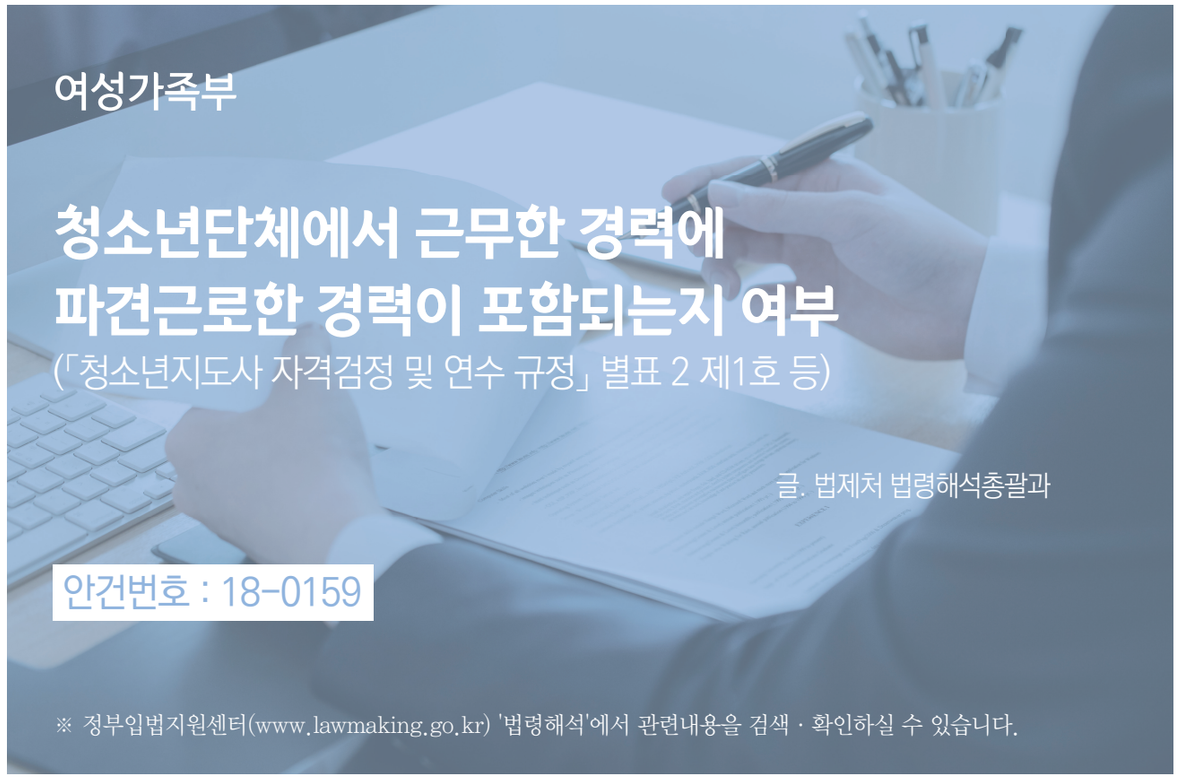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안건번호 : 18-0159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법령해석'에서 관련내용을 검색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력 중 하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고 위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기준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해당 단체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면 이를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 법제처 2018. 4. 18. 회신 18-0198 해석례 참조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되었는지 또는 파견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법제처 2018. 4. 18. 회신 18-0198 해석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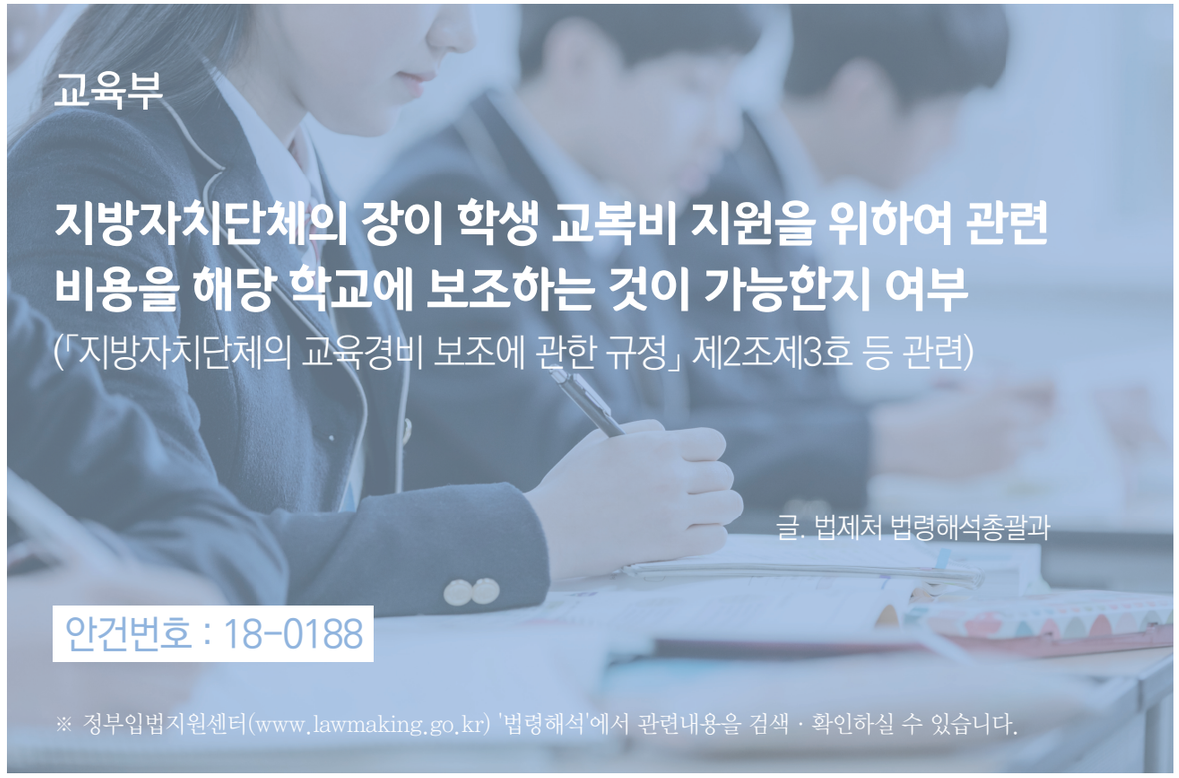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청소년단체)에 의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력 증명이 곤란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파견근무한 경우까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넓게 인정할 경우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제도"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3)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

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언과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4)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22 해석례, 법제처 2011. 11. 10. 회신 11-06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7. 12. 28. 회신 07-0447 해석례 등 참조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경력 증명의 객관성 ·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근로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안건번호 : 18-0188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법령해석'에서 관련내용을 검색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교육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해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나 교복비 보조에 대한 최근의 긍정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복비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등의 교과(군)와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합니다.1)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 교복비에 대한 보조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교복비 보조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와 같은 의미로 보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제3호)과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제5호)을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육과정운영비, 교과교실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운영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학생 교복비에 대한 보조를 학교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2)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반드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시설, 학교환경 및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적인 재량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라면 보충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5호에서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그 위임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3) 법제처 2014. 10. 27. 회신 14-063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조 대상은 단순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학교" 그 자체의 교육여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 · 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서 교복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 심리적인 부담 역시 학교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생 교복비 보조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례 참조

아울러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1조 및 제32조),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학생 교복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